#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

[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. 11. 8. 2012드단4656]



### 【전문】

【원 고】

【피고】

【변론종결】2013. 9. 16.

#### 【주문】

]

- 1. 원고 1과 피고 1(원심: 피고) 사이, 피고들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.
- 2.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1이 부담하고, 원고 2와 피고 2(원심: 소외 1)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한다.

【청구취지】 주문과 같다.

## [이유]

- 11. 인정 사실
- 가. 원고 1은 소외 2와 1960. 8. 18. 혼인신고를 하였고, 소외 2와 사이에 네 자녀를 두었다.
- 나. 그런데 원고 1은 1976.경부터 피고 2와 함께 살면서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였고, 소외 2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 1이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.

다.

- 피고 2는 자녀가 생기지 아니하자 원고 1과 상의하여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기로 하였고, 1979. 12. 30.경 산부인과 병원에서 부모를 알지 못하는 피고 1을 데려와 그 때부터 함께 키웠다.
- 라. 원고 1과 피고 2는 피고 1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자 피고 1을 원고 1의 호적에 입적시키기로 하고, 1990. 12. 29.경 피고 1이 원고 1과 피고 2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후 원고 1의 호적에 입적시 켰다.
- 마. 원고 1과 피고들의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원고 1과 피고 1 사이, 피고들 사이에 각 혈연에 의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감정 소견이 있었다.
- 바. 원고 2는 피고 2의 동생이다.

#### [이유]

】1. 인정 사실

가. 원고 1은 소외 2와 1960. 8. 18. 혼인신고를 하였고, 소외 2와 사이에 네 자녀를 두었다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나. 그런데 원고 1은 1976.경부터 피고 2와 함께 살면서 사실상 부부로서 혼인생활을 하였고, 소외 2를 상대로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원고 1이 유책 배우자라는 이유로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.

다.

- 피고 2는 자녀가 생기지 아니하자 원고 1과 상의하여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기로 하였고, 1979. 12. 30.경 산부인과 병원에서 부모를 알지 못하는 피고 1을 데려와 그 때부터 함께 키웠다.
- 라. 원고 1과 피고 2는 피고 1이 중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자 피고 1을 원고 1의 호적에 입적시키기로 하고, 1990. 12. 29.경 피고 1이 원고 1과 피고 2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한 후 원고 1의 호적에 입적시 켰다.
- 마. 원고 1과 피고들의 유전자를 검사한 결과 원고 1과 피고 1 사이, 피고들 사이에 각 혈연에 의한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감정 소견이 있었다.
- 바. 원고 2는 피고 2의 동생이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